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환경부 공고 제 2005-267 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는 신고사유 발생일부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함.
- 나. 토양오염검사 수수료를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검사방법이 추가된 직접방식에 의한 누출검사 수수료를 신설
- 다.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신규교육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조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2의 제명을 “정밀검사 관리업무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

조 제2항 중 “정밀검사대행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을 “정밀검사 관리업무의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정밀검사대행자 및 정밀검사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업무는 정밀검사대행자에 한한다.

별표27의3중 2. 정밀검사의 유효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2년
	기타 자동차	1년
사업용	승용 자동차	1년
	기타 자동차	1년

대통령령 제19172 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3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 및 용인시
2. 청주시·천안시·전주시·포항시 및 창원시

◆ 부 칙 ◆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제적 수준의 측정·분석 능력 확보〉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성규)은 「측정분석기관 정도 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해 12월 12일 전면 개정 고시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서 환경분야 측정분석기관의 측정·분석 정확성을 검토하는 정도관리 대상을 종전의 기술인력에서 기술인력·시설·장비·실험실 운영 및 자료검증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 표준물질에 의한 측정·분석 능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 표준물질에 의한 측정·분석 능력평가 • 현장평가 : 기술인력, 시설, 장비 및 운영 등 평가와 관련 자료 검증 • 우수기관에 한하여 정도관리검증서 발급

환경부는 그 동안 기술인력의 표준물질에 대한 분석능력만으로 측정분석기관의 능력을 평가하던 것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7월 1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국립환경과학원은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이번에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 고시는 정도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정도관리 심의회, 기술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한편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위촉과 정도관리 우수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검증서 발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정도관리가 정착된다면 환경분야 측정분석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이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보고 있다.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1. 2. 27 국립환경연구원 고시 제 2001-3 호
전부개정 2005. 12. 12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05-18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2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분석기관의 정도 관리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이라 함은 영 제22조 각호에 규정된 측정분석기관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 관리 신청을 한 기관을 말한다.
2. “검증기관”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정도관리결과와 적합 판정을 받고 정도관리검증서를 교부받은 측정분석기관을 말한다.
3. “숙련도시험”이라 함은 측정분석기관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표준물질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도관리) 정도관리는 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분석기관의 기술인력, 시설, 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측정분석 능력의 평가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하는 것으로 3년마다 시행한다.

제4조(대상기관) ① 정도관리는 영 제22조의 각호에 규정된 측정분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도관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영 제22조의 각호에 규정된 측정분석기관 이외의 기관이 정도관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원장에게 정도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정도관리심의회와 기술위원회 구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정도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기술적 자문을 위한 분야별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분야별 기술위원회의 장, 환경측정기준부장, 환경진단연구부장, 환경보건안전부장, 환경총량관리연구부장으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기술위원회는 대기위원회, 실내공기질·악취위원회, 수질위원회, 먹는 물위원회, 폐기물·토양위원회로 구분하며, 각 기술위원회별로 9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분야별 기술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술위원회를 분리하여 추가로 둘 수 있다.

④ 심의회와 기술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각각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심의회와 기술위원회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도관리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평가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 등을 통한 적합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이의 또는 불만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술위원회는 정도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검토·자문한다.

1. 분야별 정도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시 기술적 쟁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기술위원회의 위원 위촉) ① 기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해당 분야의 기술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2. 해당 분야의 기술위원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

제8조(심의회 운영)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조제1항의 각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한다.

② 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술위원회 운영) ① 기술위원회의 장은 해당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조제2항의 각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기술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10조(정도관리 평가위원의 위촉)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5조제1항의 현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정도관리 평가위원을 다음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정도관리 평가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환경분야 측정분석이나 정도관리 등에 대한 경력을 갖춘 자, 또는 관련분야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환경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분야 측정분석이나 정도관리 등에 대한 경력을 갖춘 자, 또는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② 정도관리 평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관리 평가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도관리 평가위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대상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을 제공받거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한 경우
3.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현장평가 범위의 평가활동을 하거나, 부정확하고 불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명예를 저해한 경우

제 11조(현장평가를 위한 정도관리 평가팀의 구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상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정도관리 평가위원으로 정도관리 평가팀을 구성하고, 정도관리 평가위원 중에서 1인을 평가팀장으로 선임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현장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기술자문을 하도록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평가팀장은 평가팀을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장평가 계획의 수립
2. 현장평가 일정의 진행
3. 현장평가보고서의 조정 및 제출

제3장 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항목

제 12조(정도관리 평가방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정도관리 평가기준의 적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숙련도시험
2. 현장평가

제 13조(숙련도시험 실시)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 19조제1항의 검증기관 및 제22조제2항의 대상기관에 대하여 숙련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숙련도시험의 항목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과 같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해 정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숙련도 시험 시기 및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등록된 대상기관 및 검증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기관은 숙련도시험 항목 중에서 분석실적이 없거나, 기타 요인으로 일부 또는 전체항목에 대하여 숙련도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련도시험 시행 60일 전까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숙련도시험을 위한 표준시료를 대상기관에 배포하고, 대상기관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준시료 분석결과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상기관이 분석결과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조(현장평가 계획의 통보)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2조제1항의 실시계획에 포함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13조의 숙련도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상기관에 한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현장평가 예정 3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평가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팀의 구성 및 현장평가 일정
2. 현장평가 범위 및 세부내용
3. 기타 현장평가에 필요한 협조사항

③ 대상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평가 일정 또는 정도관리 평가위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상기관의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 15조(현장평가의 실시) ① 정도관리 평가위원은 제17조제2항의 정도관리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직원과의 질의응답
2. 시험실 환경에 관한 사항
3. 시료 및 시약의 관리 사항
4. 측정·분석업무의 평가
5. 측정·분석장비의 검·교정 등 장비 관리 사항
6. 시험성적서 등 기록물 관리 사항

② 평가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평가 보고서를 현장평가 종료 시 대상기관에게 전달하고 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정도관리 평가기준의 적합여부를 평가한 결과
2. 현장평가 시 제시된 보완사항 또는 시정사항이 포함된 평가의견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상기관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완사항 또는 시정조치 결과를 현장평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평가 보고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 또는 시정조치 결과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팀장에게 보완 및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현장평가 실시결과 및 숙련도시험 결과를 포함한 정도관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제 16조(정도관리 평가분야 및 항목) ① 정도관리 평가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분야별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1. 대기분야

2. 수질분야
3. 먹는 물분야
4. 폐기물분야
5. 토양분야
6. 실내공기질분야
7. 악취분야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평가항목에 대한 시험 방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2. 환경부장관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고시 또는 예규로 규정한 시험방법

제 4 장 정도관리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제 17 조(정도관리 평가기준) ① 숙련도시험은 별표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항목별 평가에 미흡이 없고 Z값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평가하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② 현장평가는 별표3에서 정한 평가기준 항목에 따라 실시하며,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한다.

제 18 조(검증기관의 심의)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 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 평가보고서를 심의회에 상정한다.

② 심의회는 정도관리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우수 여부를 결정한다.

제 19 조(검증기관의 검증서 발급)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으로 판정 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검증기관으로 인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증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 명칭 및 일반사항
2. 검증분야 및 항목
3. 검증일자
4. 검증유효기간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도관리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관리에 미달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측정분석 인력의 훈련 또는 현지지도 등을 통한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20 조(검증기관의 검증유효기간 및 정도관리 유지)

① 검증기관의 검증유효기간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검증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측정·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숙련도시험 참가
2. 측정분석 기술 및 시험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

제 21 조(검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 평가기준의 지속적인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측정분석기관의 시험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숙련도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③ 검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증기관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 시험실의 소재지의 변경

④ 검증기관은 정도관리검증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정도관리검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정도관리검증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

1. 제2항제2호의 숙련도시험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의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3. 숙련도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한 경우나, 또는 고의로 결과를 누출시킨 경우
4.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도관리 검증을 받은 경우

제5 장 보칙

제22조(정도관리 실시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관리 대상기관, 정도관리 평가항목 등을 포함한 정도관리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한 후에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도관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최초의 정도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숙련도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한 후, 숙련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세칙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관리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정도관리 운영, 평가기준, 정도관리 평가위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숙련도시험에 관한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관리를 운영함에 있어 심의회위원, 기술위원회위원, 정도관리 평가위원 등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월간 ‘환경기술인」

- 구독방법 : 무통장 입금 기본(지로용지 납부 가능)
- 구독료 : 6만원(1년)
- 구입문의 : (02)852-2291(연합회 사무국)